

토 지 정 보 과

계 속 사 업

1. 지적도면 D/B 자료정비사업
2.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
3.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
4. 개발부담금 부과·징수
5. 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6.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
7.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
1 지적도면 D/B 자료정비사업

계속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(KRAS)에 등록된 전산화 도면의 도곽간, 축척간, 행정구역간 발생하는 부정확한 경계 및 오류 정비
- 체계적 지적공부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정보의 합리적 기반 구축

◆ 주요내용

- 위 치 : 관내 30개 동 지역 중 전년도 시범사업 4개동 제외한 26개동
- 사 업 량 : 1,483매(지적도 1,414매, 임야도 69매)
- 사업기간 : 2021 ~ 2022. 12월
- 사 업 비 : 26개동 450백만원 정도('21년도 시범사업 4개동 50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재 원 별			
	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(지방채)
위탁사업비	450			450	

2. 세부추진계획

- 사업계획 수립 : '22. 1월
- 대상지선정 및 일필지 현황조사 : '22. 3월
- 내업도면접합 결과도면 작성 : '22. 3~11월
- 최종검수 및 완료 : '22. 12월

3. 기대효과

-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
- 공간정보 융·복합과 활용의 극대화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지적담당 정해욱(☎ 6371)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2021. 1. 1.부터 지적공부가 현행 동경원점 지역좌표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일제 변환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정비 필요
 - ※ 공간정보구축법 제6조 및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
- 도근점 등 지적기준점 일제 정비,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제고, 토지경계분쟁에 따른 측량민원 예방
 - ※ 세계측지계란?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의 측지계(GPS위성 위치정보와 일치)

◆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2. 3 ~ 12월
- 위 치 : 관내 동지역(순차적으로 동별 현황조사 및 업무량 파악)
- 사업량 : 198점
- 조사반 : 1개반 3명(시 2, 한국국토정보공사 1)
- 사업비 : 20백만원(시비)
 - ※ 전체 지적기준점 4,840점(삼각점 7, 보조점 112, 도근점 4,721)에서 기 취득·고시한 800점(17%)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예정

2. 세부추진계획

-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획수립 : '22. 2 ~ 3월
- 현장 전수조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성과취득 : '22. 3 ~ 12월

3. 기대효과

- 측량성과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사전 방지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지적담당 정해욱(☎ 6371)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소유권 보존 미등기 및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권리관계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 처리
- 소유권 이전등기에 어려움 겪는 실권리자 권리보호 및 편의 제공

◆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(2년간) ※ 등기신청 : 2023. 2. 6.까지
- 적용대상
 - 1995. 6. 30.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
 -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
 - 동지역 : 농지 및 임야 / 읍면지역 : 모든 토지 및 건물
- 사 업 비 : 11백만원(국비 5, 시비 6) ※ '21년 12.5백만원(국비 7, 시비 5.5)

2. 세부추진계획

- 확인서 발급신청(보증서 포함) 접수 및 공고(2개월)
- 공고기간 만료 후 확인서 발급
-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 처리

3. 기대효과

-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지적담당 정해욱(☎ 6371)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 및 투기행위 사전 방지
-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공정하고 정확한 세부과로 공평과세 구현

◆ 주요내용

- 기 간 : 2022. 1 ~ 12월
- 대상사업 :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8개 분야 사업
- 부과면적 : 도시지역 990m², 비도시지역 1,650m² 이상
- 사 업 비 : 44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재 원 별			
	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검증수수료	44			44	

2. 세부추진계획

-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조사 : '22. 1~12월
- 산출내역서 제출통지 및 개발비용 산정 : '22. 1~12월
-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·징수 : '22. 1~12월

3. 기대효과

-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 및 투기행위 사전 방지
-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방세수 증대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토지정보담당 김사정(☎ 6381)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산정으로 공평과세 실현
- 관계기관 자료제공 및 부동산 거래시장의 적정한 가격 형성 도모

◆ 주요내용

- 기 간 : 2022. 1 ~ 12월
- 대상사업 : 약 180,000필(도로, 구거 등 공공용지 제외)
- 사 업 비 : 184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재 원 별			
	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검증수수료	184	64		120	

2. 세부추진계획

- 조사대상 필지 확정 : '22. 1월 / '22. 7월
- 지가산정 및 검증 : '22. 2~3월 / '22. 8월
-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: '22. 4월 / '22. 9월
- 가격공시 심의 및 결정·공시 : '22. 5월 / '22. 10월
- 이의신청 및 지가조정 공시 : '22. 6~7월 / '22. 11~12월

3. 기대효과

-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 제고 및 공평과세 실현
- 국세,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의 과세자료 제공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토지정보담당 김사정(☎ 6381)

1. 목 적

-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로 주소사용자의 편의 제공
-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수시 및 일제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

2.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

- 기 간 : 2022. 1 ~ 12월
- 내 용
 - 신설도로구간 도로명 부여
 - ※ 도로구간 및 도로명(안설정 ⇒ 주민의견수렴 ⇒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⇒ 도로명부여 고시)
 - 신·증축 건축물 도로명주소 부여 및 고지·고시 : 700건
 - 상세주소 부여 : 300건

3.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

- 기 간 : 2022. 1 ~ 12월
- 사 업 비 : 120백만원(시비)
- 내 용
 - 보행자용 도로명판 추가설치(60백만원)
 - 실생활에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·골목길에 도로명판 확충
 -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(40백만원)
 - 오류정비 및 망실·훼손 재설치
 - 사물주소판 설치(20백만원)
 - 택시승강장, 버스정류장, 소규모도시공원, 인명구조함 등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새주소담당 전경인(☎ 6391)

1. 사업개요

◆ 목 적

-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
-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

◆ 주요내용

- 위 치 : 도량동, 해평면 낙성리, 무을면 무수리 일원
- 사 업 량 : 1,050필 / 346,936㎡
- 사업기간 : 2022 ~ 2023년(2년간)
- 사 업 비 : 215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재 원 별			
		국 비	도 비	시 비	기 타
측 량 비	215	215			

2. 세부추진계획

-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 개최 : '21. 10~12월
-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신청 : '22. 1~ 2월
- 측량대행자 지정 및 일필지 조사 및 측량 : '22. 3~ 6월
- 경계협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: '22. 7~12월
-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확정 : '23. 1~ 5월
- 사업완료공고 및 조정금 지급·징수 : '23. 10~12월

3. 기대효과

- 토지의 정형화 및 불합리한 경계 재조정으로 토지 이용가치 상승
-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

담당부서 : 토지정보과 담당 : 지적재조사담당 이형탁(☎ 6376)